

평생교육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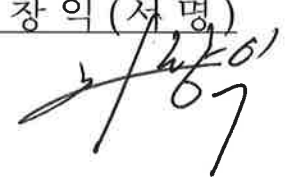
<목 차>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및 폐쇄 신고
2.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 의무
3.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대상 및 기준
4.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 범위 및 횟수, 시기 등
5. 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 또는 폐쇄신고시 제출 서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 성 자	이름	이연주
	담당부서 (과)	평생 학습지원과		직급	서기관
	국장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연락처	044-203-6384
	과장	평생 학습지원과장 최윤정		이메일	carpediem798@mail.go.kr

2023. 10. 27. 작성

평생 직업 교육 정책 관

최 창 익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및 폐쇄 신고											
	2.규제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3.위임법령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11.01~2023.12.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평생교육법」 20조의2 및 38조의2가 개정(2023. 4. 18.)됨에 따라, 교육감에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됨 ○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폐쇄신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함.											
	7.규제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등록한 자가 명칭, 위치 등 8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변경 등록하도록 근거 마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등록한 자가 시설을 폐쇄할 경우, 폐쇄 예정 30일 전까지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근거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123명, '23. 9월 말 기준) ○ 이해관계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123명, '23. 9월 말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등록 장애인(265만명, '22. 12월 말 기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td><td>123명(2023년 9월 말 기준)</td></tr><tr><td>이해관계자</td><td>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 시도교육청, 등록장애인</td><td>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123명, 2023년 9월 말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등록장애인(265만명, 2022년 12월 말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	123명(2023년 9월 말 기준)	이해관계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 시도교육청, 등록장애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123명, 2023년 9월 말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등록장애인(265만명, 2022년 12월 말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	123명(2023년 9월 말 기준)											
이해관계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 시도교육청, 등록장애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123명, 2023년 9월 말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등록장애인(265만명, 2022년 12월 말 기준)											
9.규제목표	○ 교육감에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주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경우, 이에 대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 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 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u>제12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 등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u> <u>1. 명칭</u> <u>2. 유형·목적</u> <u>3. 위치</u> <u>4. 교육과정 편성내역</u> <u>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u> <u>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u> <u>7. 개설예정일</u> <u>8. 운영규칙</u>
	<u>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신고) 법 제20조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u> <u>1. 폐쇄사유</u> <u>2. 폐쇄연월일</u> <u>3. 그 밖에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평생교육법」 20조의2 및 38조의2 개정(2023. 4. 18.)으로 교육감에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 신고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폐쇄신고’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 「평생교육법」 상 폐쇄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근거 조문 >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 이용자는 장애인으로서 시설 변경 및 폐쇄 시, 변경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수요자 학습권 보장 가능
 - 또한 유사입법례*를 살펴볼 때, 신고 주체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 시, 변경·폐쇄 신고 조문이 있는 점 또한 근거 마련 필요성 뒷받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복지부) / 구체적 조문은 타 법사례(7p)에 후술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	대안명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변경등록 및 폐쇄신고
	내용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8개 사항 변경 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3개 사항 구비)

* 규제대안 : 동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규제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폐쇄에 관한 근거 부재로 시설별 변동사항 관리의 효율적 관리 부족
규제대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및 폐쇄신고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시설별 변동사항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시설 수요자(장애인) 편의 제고	해당없음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및 폐쇄신고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별 변동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
-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설 사용자에게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근거 마련 필요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이하생략>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일반국민	입법예고(2023.11.1.~12.10) 예정		

3. 규제목표

- 장애인평생교육시설별 변동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학습자 편의 및 만족도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 등록 및 폐쇄 신고 근거를 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교육감 등록의무가 부여된 만큼, 既 등록된 사항의 주요사항 변경 등록 및 시설 폐쇄 신고 사유 발생 시에도 설치 주체가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더구나, 시설 변경 등록 및 폐쇄 신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별 변동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 이는 곧 시설의 주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변경·폐쇄 정보의 원활한 안내를 가능케 하여 수요자 편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
-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위임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 등록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변경, 휴·폐업 시 신고 등 근거를 두고 있음
 - (사례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변경신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14조(임대현황 등의 신고)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3조(임대현황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 (사례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지정 및 휴·폐업 신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7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제공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타 입법례와 사례에 비춰볼 때도 피규제자(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자)가 既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경우, 변경등록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항은 설치 주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준수·협조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수가 123개(23. 9월 말 기준)에 지나지 않고, 주요사항 변경이나 폐쇄 신고 또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니므로 시설 등록자·교육감의 행정적 집행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주요사항 변경이나 폐쇄 신고가 시설등록자·교육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집행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평생교육법」 개정(‘23.4.18.)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및 시설 폐쇄 근거 조문 마련(시행령에 위임)

2. 향후 평가계획

- 교육부-교육청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별 정책 준수도 확인(매년 2~3회)

3. 종합결론

- 동 조항은 법률에 위임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 등록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 의무								
	2.규제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3.위임법령	평생교육법 제26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11.01~2023.12.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평생교육법」 제26조의 2 신설로 평생교육사 실태 조사 관련 조항이 마련됨. 해당 조항은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개입 필요성) 먼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임. 또한 평생교육사의 활동 실태, 보수 수준 등을 파악하여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종사자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사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함임								
	7.규제내용	○ 평생교육사의 양성, 보수 수준, 활동 실태 등의 항목에 대해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평생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사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평생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사</td><td>157,235명(2022년 4월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평생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사	157,235명(2022년 4월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평생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사	157,235명(2022년 4월 기준)								
9.규제목표	○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의 책무성 확보 및 평생교육 종사자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및 기관별 배치 현황 2. 평생교육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사의 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사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자와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현 행	개 정 안
	<u>수 있다.</u>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최근 급변하는 산업·직업 구조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재정비해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
 - 이에 평생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각종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됨
 - 현재 평생교육사의 양성 현황과 배치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나(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위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 규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됨
 - 최근 신설된 「평생교육법」 제26조의2는 평생교육사의 양성 현황과 배치 현황뿐만 아니라 보수 수준·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함
 - 해당 조문은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개입 필요성) 실태조사 항목 중 양성·배치 현황의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평생교육사의 활동 실태, 보수 수준 등을 파악하여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종사자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평생교육 사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을 시행령 통해 구체화
	내용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내용 규정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방법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 최소화	급변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적시 대응 곤란,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에 대한 배치 의무(법령에 규정) 파악 곤란
규제대안1	급변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적시 대응,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에 대한 배치 의무 이행 여부 파악 용이	해당없음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 보수 수준, 활동 현황 등 평생교육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이를 평생교육 사업·정책에 활용하고자 하기 위함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일반국민	입법예고(2023.11.1.~12.10) 예정		

3. 규제목표

- 평생교육사의 근무 여건,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 대국민 평생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제공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필수불가결하고, 조사 항목 또한 과다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수단으로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1.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 「동법 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사항(성별, 나이, 소득, 취업상태 등)을 규정하며 실태조사 방법을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

* 「아이돌봄지원법」 제28조2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 「동법 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사항(돌보미 특성 및 활동 실태, 종사자 실태 등)을 규정하며, 실태조사 방법을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함
- 실태조사 방법은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으로 규정

3. 「여성과학기술인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여성과학기술인법」 제6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 「동법 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사항(근무상황, 개발활동 참여상황, 근무환경 등)을 규정하며 실태조사 방법을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함
- 실태조사 방법은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방법으로 규정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평생교육사의 활동 실태나 보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추후 평생교육 현장의 여건·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여지가 높으므로, 실태조사에 따른 피규제자의 협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의 평생교육 통계조사 방법을 활용하거나, 경험 있는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에 별도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진행할 수 있어 집행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이 수반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근거 조항 마련 및 동법 시행령에 관련 사항 위임('23.4.)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사항 없음

3. 종합결론

-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의 항목과 목적, 추후 활용 방향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에 따른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한 규제인 것으로 파악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대상 및 기준								
	2.규제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3.위임법령	평생교육법 제28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11.01~2023.12.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우수 평생교육기관 인증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촉진 * 「평생교육법」 제34조의2 신설('23.4.18. 개정, '24.4.19. 시행) ○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 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수요자에게 기관 선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사이의 선의의 경쟁 유도 가능								
	7.규제내용	○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대상, 기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상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시도평생교육진 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평생교육시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td><td>평생교육시설 4,400여개,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501개(2022년 4월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평생교육시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시설 4,400여개,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501개(2022년 4월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평생교육시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시설 4,400여개,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501개(2022년 4월 기준)								
9.규제목표	○ 평생교육기관 질 제고 및 평생학습 촉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운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대상 기관으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구비 등 기본 요건 2. 교육 과정·방법, 평생교육사 배치 등 운영 요건 3. 평생교육기관 특성화, 질 관리 등 역량 요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우수 평생교육기관 인증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촉진 필요

* 「평생교육법」 제28조의2 신설('23.4.18. 개정, '24.4.19. 시행)

-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수요자에게 기관 선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사이의 선의의 경쟁 유도 가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제도 유지
	내용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 미도입
규제대안1	대안명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 도입
	내용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대상, 기준 설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 최소화	평생교육기관 우수사례 파악 곤란, 학습자의 선택권 제한
규제대안1	우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촉진 가능	해당 사항 없음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인증하여 평생학습 질 관리 제고
 - 평생학습 참여자에게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평생교육기관은 학습자 참여 촉진 및 홍보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일반국민	입법예고(2023.11.1.~12.10.) 예정		

3. 규제목표

- 우수 평생교육기관 사례 발굴, 평생교육기관 질 관리 강화, 평생 학습 참여 촉진을 통한 평생학습 진흥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의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하되,
 -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평가·인증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전문 기관에의 위탁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평가·인증제 시행 예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06.~)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 14조를 근거로,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17.~)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8조를 근거로, 박물관·미술관 설립 이후 운영 부실 방지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운영 노력과 성과 평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체 평생교육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신청에 기반한 제도로 운영 예정이며, 효율적 제도 설계로 피규제자 부담 최소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평가·인증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전문기관에의 위탁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평가·인증제 시행 예정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을 수반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제 근거 마련 및 관련 사항 동법 시행령에 위임('23.4.)

2. 향후 평가계획

- 평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유효기간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안 마련하여 평가인증제 시행 예정

3. 종합결론

- 평생교육기관의 질 관리 제고 및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해 동 규정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 범위 및 횟수, 시기 등								
	2.규제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3, 별표 10,11,12								
	3.위임법령	평생교육법 제34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11.01~2023.12.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평생교육법」 제28조의2 신설('23.4.18. 개정, '24.4.19. 시행) ○ 평생교육시설은 약 4,400여개('22.4. 기준)로, 현재는 일반국민 대상 정례적으로 공시되는 정보가 없어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 및 책무성 담보에 한계 존재								
	7.규제내용	○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 범위, 횟수, 시기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시설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유형별 평생교육시설</td><td>4,400여개(2022년 4월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4,400여개(2022년 4월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4,400여개(2022년 4월 기준)								
9.규제목표	○ 평생교육시설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3(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의 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⑤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 교육시설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평생교육법」 제34조의2 신설('23.4.18. 개정, '24.4.19. 시행)

- 평생교육시설은 '23.4월 기준 4,529개로, 현재는 일반국민 대상 정례 적으로 공시되는 정보가 없어 공공성 및 책무성 담보에 한계

<평생 교육시설 현황('23.4월 기준)>

시설 유형		학력 인정 여부	기관수			설치요건	
			'21	'22	'23		
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2)	발달장애인 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미인정	77	83	86	-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시설 설비 구축 - 시설 총 면적 500㎡ 이상 500㎡ 미만별로 기준을 달리하여 편입시설 구축(교육감 고시)	교육감 등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미인정	32	35	37	- 시설 총 면적 300㎡ 이상 -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시설 설비 구축 - 시설 총 면적 500㎡ 이상 300-500㎡ 미만별로 기준을 달리하여 편입시설 구축(교육감 고시)	지자체 지정 및 교육감 등록
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초·중·등 학교부설	미인정	8	10	9		교육감 보고
	대학(원)부설	미인정	414	416	419		교육부장관 보고
③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초등학교	인정	3	2	2	- 학습시설설비, 자료실, 관리실 구비	교육감 등록·지정
	중학교	인정	5	4	4	(상동)	교육감 등록·지정
	고등학교	인정	22	20	19	(상동)	교육감 등록·지정
	통합과정	인정	17	17	17	(상동)	교육감 등록·지정
	전공대학	인정	3	3	3	- 학교법인 이면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1.1.1.1.1.	추가설치 불가
④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	인정	8	8	8	- 교사, 교원 확보	교육부장관 인가
⑤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 형태	미인정	1,048	1,042	1,204	- 10명 이상 학습자, 30시간 이상 강의	교육감 신고
	원격대학	인정	2	2	2	- 지자체 법인 비영리법인 중 1 - 교사,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교육부장관 인가
⑥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미인정	413	393	389	- 종업원 100명 이상	교육감 신고
⑦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미인정	474	439	423	- 법인/주무관청 등록/300명 이상 중 1 - 5명 이상 전문인력 확보	교육감 신고
⑧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미인정	1,098	1,134	1,343	- 관련법상 등록되거나 법인 - 5명 이상 전문인력 확보	교육감 신고
⑨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미인정	594	561	564	- 1년이상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 5명 이상 전문인력 확보	교육감 신고
합 계			4,218	4,169	4,529		

* 일반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매년 공시 중('08.~)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제도 유지
	내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제도 미도입
규제대안1	대안명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제도 도입
	내용	유형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 제도 도입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 최소화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교육 여건 등 일반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및 시설의 책무성·공공성 제고에 제한
규제대안1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교육 여건 등 공개의 정보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설의 책무성·공공성 제고	평생교육시설에 매년 정보공개 의무가 새롭게 부과

o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주요 정보에 대한 정보를 매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준한 정보 공개로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평생학습 수요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공시 대상 평생교육시설	공시항목에 대한 의견 조 회 및 회신	공시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 공시 곤란(해당 사 항 없는 항목 등)이라는 의견 제출	의견 검토 후 삭제 사유가 타 당한 항목은 삭 제 후 개정 계 획에 반영
일반국민	입 법 예 고 (2023.11.1. ~12.10.) 예정		

3. 규제목표

-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교육여건 등 공개의 정보로 국민의 알권
리 충족 및 시설의 책무성 · 공공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에 준하여 세부 공시 항목을 정하되,
- 세부 공시 항목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가능한 범위로 한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초·중·고등학교 정보공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통해 약 12,000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학생, 교원현황, 시설, 교육여건, 재정상황 등의 항목들을 공시 중
- 대학 정보공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학교알리미(www.academyinfo.go.kr)” 통해 약 420여개 대학교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학생, 교원현황, 시설, 교육여건, 재정상황 등의 항목들을 공시 중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 및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 등 평생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
- 개정계획 수립시 유형별 공시항목 및 공시범위에 대해 평생교육시설 및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평생교육기관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ISP 실시, 정보공시 관리기관 지정 등을 거쳐 효율적인 정보공시 방안 도출 예정이고,
- 정책 설계시 학교정보공시 및 대학정보공시 등 기 시행 중인 정보공시제도 참조 가능하여 행정적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을 수반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기관 정보공시 근거 마련 및 관련 사항 동법 시행령에 위임('23.4.)
- 유형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정 공시항목 범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23.4.~5.)

2. 향후 평가계획

- 평생교육기관이 충실히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수시 점검 실시 예정

3. 종합결론

-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학습권 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동 규정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 또는 폐쇄신고시 제출 서류		
	2.규제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2조제1항		
	3.위임법령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 제32조제5항, 제42조제3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11.01~2023.12.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또는 폐쇄신고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 규정 필요 *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 제32조제5항 개정 및 제42조제3항 신설('23.4.18. 개정, '24.4.19. 시행)		
	7.규제내용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또는 폐쇄신고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 사항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초·중·고), 전문대학 학사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9.규제목표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폐쇄절차 정비로 행정 예측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미해당

			관련된 규제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u>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u> < 신설 >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u> 1. <u>폐쇄사유</u> 2. <u>폐쇄연월일</u> 3. <u>재학생 보호방안</u> 4. <u>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u>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u>교육부장관의</u>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 ----- ----- -- <u>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u> ----- -----. 1. · 2. <u>현행과 같음</u> 3. <u>재학생 보호방안</u> 4. <u>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u>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 ----- ----- -----. 1. · 2. <u>현행과 같음</u>

현 행	개 정 안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3. <u>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u>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 신설 >	3. 재학생 보호방안 4. <u>학적부</u>-----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재학생 보호방안 4. <u>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u> 제76조의3(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① <u>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인가취소를 명한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1. 재학생 보호방안 2. <u>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u>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또는 폐쇄신고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 규정
 - *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 제32조제5항 개정 및 제42조제3항 신설 ('23.4.18. 개정, '24.4.19. 시행)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강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제도 유지
	내용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제출사항 규정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제출사항 규정
	내용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 처리방법 제출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 최소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 또는 폐쇄신고시 절차 및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학생 보호방안 제시 등 미흡
규제대안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 또는 폐쇄신고시 절차 및 서류를 명확히 하여 재학생 보호 강화 및 행정 예측성 제고	해당 사항 없음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및 폐쇄신고시 재학생 보호 강화 및 행정 예측성 제고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마련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일반국민	입법예고(2023.11.1.~12.10) 예정		

3. 규제목표

- 재학생 학습권 보호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인가취소 또는 폐쇄 신고시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재학생 보호방안)을 포함하여 인가 취소 또는 폐쇄신고시 필요한 최소한의 제출 내용을 정하되,
 - 유형별로 대동소이한 내용이 각기 다른 체계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동일한 체계로 일원화하여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 제출 기간을 (자진) 폐쇄신고의 경우에는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청의 처분에 의한 인가취소의 경우에는 폐쇄예정일 3개월 이내로 하여, 해당 기관에 충분한 준비 기간 부여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 : 학교 폐쇄시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인가취소 또는 폐쇄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내용 중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재학생 보호방안’은 기존 규정의 ‘재학생 처리방안’에서 문구가 개정된 것이며,
- 또한, 전공대학(제32조 제1항) 대상으로 서류 제출 기한 명시 및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을 추가한 것은 유사한 유형(제47조상 사내대학, 제52상 원격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행정 예측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준수 가능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및 폐쇄신고시 절차를 동일한 체계로 일원화하여 행정적 집행 가능성 제고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이 수반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또는 폐쇄신고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제출 의무 규정하고, 관련 사항 동법 시행령에 위임('23.4.)

2. 향후 평가계획

- 별도 평가계획 없음

3. 종합결론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또는 폐쇄신고시 재학생 보호방안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할 사항 및 절차를 정비하여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 규정 개정 필요